

제195회 영등포구의회
2016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6. 2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45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)
- 나.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(안 제5조, 제6조)
- 다.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 대상지역을 규정함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, 「같은 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, 중복규정 등 필요 없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〈조례정비 내역〉

현 행		개 정
제1장 총칙		1조~9조
제2장 등록면허세		
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	4조~6조	
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	7조~9조	
제3장 재산세		

- 현행 3장 2절 18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개정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규정, 정의,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, 세율, 납기,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, 납기 등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음.

- 현행 조례는 1998.5.1. 제정되어 그 동안 26차례 개정하였는바, 이와 같은 잦은 개정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을 개정 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임. 주요 중복규정 사례를 보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, 법 제111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조례에 기재하였고,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신고의무, 비과세 신청 등의 내용도 같은 경우임.
- 따라서,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, 행정력 낭비,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.
- 또한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만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”라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사례임.